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 가야하는 시기에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된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전담시설 설치, 업무 등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2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 설치·운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관계 법령

---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관계 법령

---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